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. 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종전 법원·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·면·동·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(별표)에 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” 신설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
- 나. 민법부칙 제3조제4항
- 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
- 라.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
- 마.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

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의 (별표)제증명등수수료중 【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,확인 등】  
란의 8을 9로하고,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(별표)

## 제증명등 수수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【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,확인 등】 8.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	1건당	600원	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증명등수수료(별표)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				(별표)			
제증명등수수료				제증명등수수료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【증명】				【증명】			
1.~11. (생략)				1.~11. (현행과 같음)			
【인가,허가,신고,신청, 등록,지정,확인 등】				【인가,허가,신고,신청, 등록,지정,확인 등】			
1.~7. (생략)				1.~7. (현행과 같음)			
(신설)				8.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			
8.기타(생략)				9.기타(현행8과같음)			
					1건당	600원	